

##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1997년 12월  
기획총무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1997년 11월 12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제출  
    및제안자
- 나. 회부일자 : 1997년 11월 15일
- 다. 상정일자 : 제71회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1997년 12월 3일 상정)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1997년 12월 8일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지방세과장 정광량 >

#### 가. 제안사유

- '97. 10. 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세금의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세권자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있으면,
-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케함으로써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조세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세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설치 (신설)

- 기 능 : 구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심사
- 구 성 : 7명 (당연직 및 위촉직)
- 임 기 : 2년 (당연직 제외)
- 수 당 :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시 예산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지급
-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박종근 >

○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10. 1차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공정, 공평과세로 신뢰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납세자로부터 이의가 있으면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결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지방세 체납에 따른 예방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사항 : 없음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 광주광역시서구조례증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회 의원 및 지방세 관련 5급이상 구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를 동수로하여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 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 관련 제도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써 위원장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
3. 당해 과세와 관련이 있는 개인 및 법인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내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과세예고통지
3.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때는 부결로 처리한다.

⑧적부심사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 간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구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⑨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기타 중요한 사항

⑩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lt;신설&gt;</p>	<p>제14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회 의원 및 지방세 관련 5급이상 구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를 동수로하여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li> <li>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li> <li>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li> <li>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li> <li>5. 기타 지방세 관련 제도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li> </ol> <p>③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p>

현행	개정
	<p>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 또는 배우자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li> <li>2.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써 위원장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li> <li>3. 당해 과세와 관련이 있는 개인 및 법인</li> </ol> <p>⑥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li> <li>2. 과세 예고통지</li> <li>3.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li> </ol> <p>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때는 부결로 처리한다.</p> <p>⑧적부심사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구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현행	개정
	<p>⑨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최일시 및 장소</li> <li>2. 출석위원 성명</li> <li>3. 심의사항</li> <li>4. 진행사항</li> <li>5. 위원 발언요지</li> <li>6. 심의결과</li> <li>7. 기타 중요한 사항</li> </ol> <p>⑩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⑪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